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14
----------	------

2024년 9월 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8월 12일, 최민규 의원 외 25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08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09월 0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민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항)
- 2)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항)

- 3)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의 체험관 휴관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4) 체험관 대상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5) 체험관 인솔자 인원의 추가 규정을 삭제함. (안 제5조)
- 6) 체험관의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명을 “시설의 관리”로 변경함. (안 제8조)
- 7) 체험관 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체험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13조)
- 8) [별표] 체험관 이용료 규정을 삭제함.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 과정의 도입 노력의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노력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체험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날과 추석의 휴관일을 연휴기간까지로 확대하면서 체험관 운영 권한을 체험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u>이 조례에 따라</u>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u>이 조례 및 「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u>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p> <p>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1월 1일, <u>설날, 추석</u></p> <p>2. 매주 월요일</p> <p>3.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p> <p>③ ~ ⑥ (생략)</p>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u>설날 및 추석 연휴</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이용대상자) ① <u>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u>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u>제1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u></p>	<p>제4조(이용대상자) <u>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u>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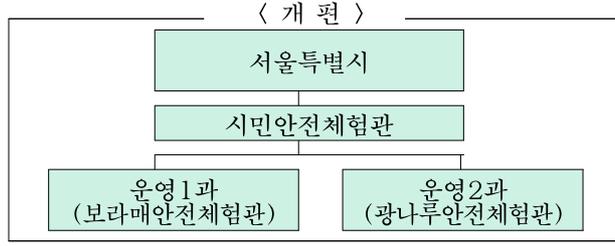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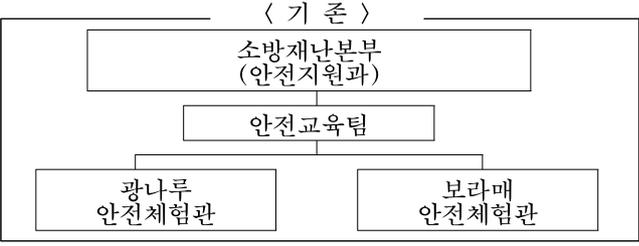
<p><u>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시·도민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u></p>	
<p>제5조(이용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인이 동반할 수 있으며 20명 초과시에는 25명까지 마다 1인씩 추가되어야 한다.</u></p>	<p>제5조(이용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p>
<p>④·⑤ (생략)</p>	<p><u><후단 삭제></u></p>
<p>제8조(재산 및 물품관리) <신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①·② (생략)</p>	<p>제8조(시설의 관리) ① <u>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신설></p>	<p>제13조(권한의 위임) <u>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u></p>
<p>[별표] (생략)</p>	<p><삭제></p>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현황**

-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안전체험관’과 ‘광나루안전체험관’을 「2023년 상반기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¹⁾」에 따라 2023년부터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 운영중에 있음.

1) 「2023년 상반기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소방행정과-45867, '22.12.28.)」

- 편제조정(소방재난본부→서울시직속), 관장직급 상향조정(소방령→소방정)
- 운영1과(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2과(광나루안전체험관)



- 이에 따라, 운영1과인 ‘보라매안전체험관’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020㎡의 규모로 2010.5.25. 건립되어 현재 64명의 운영인력이 21개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 운영2과인 ‘광나루안전체험관’은 광진구 능동로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5,444.5㎡의 규모로 2003.3.6. 건립되어 45명의 운영인력과 20개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시민안전체험관 운영현황

구 분	보라매안전체험관(운영1과)	광나루안전체험관(운영2과)
개관일	2010. 5. 25.	2003. 3. 6.
위 치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보라매공원 내)	광진구 능동로 238 (어린이대공원 옆)
시설규모	3/1층, 연면적 8,020㎡, 대지4,753㎡	3/1층, 연면적 5,444.5㎡, 대지 5,041㎡
시설건립 총 비 용	414억 5,200만원	205억 4,900만원
연간운영비 (시비) *2024년	1,804,265천원	
이용대상	어린이 이상 (6세 이상)	어린이 이상 (6세 이상)
운영인력	[총 64명] ▷ 운영분야 : 16명(소방 13, 용역3) ▷ 청사관리 : 9명(청소 6, 시설관리 3) ▷ 사회복무 : 3명(안전관리) ▷ 의용소방대 : 36명	[총 45명] ▷ 운영분야 : 10명(소방 7, 용역 3) ▷ 청사관리 : 8명(청소 5, 시설관리 3) ▷ 사회복무 : 4명(안전관리) ▷ 의용소방대 : 23명
안전교육 시간	▷ 재난체험 : 1시간 30분 ▷ 전문체험 : 1~4시간 (※ 소방시설실습, 응급처치실습) ▷ 어린이체험 : 1시간 ▷ 자유관람 : 시간제한 없음 (※ 소방역사박물관, 4D체험)	▷ 재난체험 : 1시간 30분 ▷ 전문체험 : 1~4시간 (※ 응급처치실습) ▷ 새싹어린이체험 : 1시간 ▷ 소방관진로체험 : 1시간
체험관 이용방법	사전 예약(인터넷) + 자유관람	사전 예약(인터넷) + 자유관람
체험시설	[총 21개 분야] 화재안전(7), 생활안전(4), 보건안전(1), 파난기구(1), 교통안전(1), 자연재난(2), 산업안전(1), 기타시설(4)	[총 20개 분야] 화재안전(6), 생활안전(4), 보건안전(1), 파난기구(2), 자연재난(2), 산업안전(1), 기타시설(4)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근거 및 기능의 추가(안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은, 체험관의 설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을 ‘이 조례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소방기본법」 제5조2)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안전체험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4항은 시장에게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데,
- 최근 급격한 사회 및 환경 변화로 재난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난체험 교육을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반영하여 체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2)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휴관일 확대 조정(안 제3조제2항제1호)

- 안 제3조제2항제1호는, 체험관의 휴관일(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중 설날 및 추석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에서 정하고 있는 설날 및 추석의 전날과 다음날을 포함하는 ‘설날 및 추석 연휴’와 일치시켜 확대하려는 것으로,
- 일반적인 관공서 공휴일과 다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명절연휴 휴일권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과 현재 체험관 휴관일을 활용하여 체험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체험관의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충분한 작업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체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표 3]과 같이 공휴일 체험관 1일평균 이용객 실적을 살펴보면 설날 및 추석 연휴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대비 약 50%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 당초 체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연휴기간을 활용하여 체험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휴 기간의 수요를 주말이나 공휴일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8. (생략)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이하 생략)

[표 3] 최근 3년간 시민안전체험관 공휴일 일일평균 방문객 수

(단위 : 명)

구 분	설날 및 추석 연휴	주말	공휴일
평균	74	134	143
2022	코로나19로 공휴일 미운영		
2023	77.5	128	128
2024	70.7	140	158

- 참고로, 현재 전국 소방체험관 14개소 중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11개 체험관은 명절연휴를 휴관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3개소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모두 휴관 중임.

다. 체험관 이용대상자 변경(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체험관 이용 대상을 ‘서울특별시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로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시 도민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현재 체험관 이용 예약 시 실제로는 별도의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다른 시도민⁴⁾ 뿐만 아니라 외국인(‘24.7.31. 기준 73,802명 방문)⁵⁾도 체험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4) 2024년도 상반기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만족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설문참여자 2,710명(보라매 1,690명, 광나루 1,020명) 중 거주 지역은 서울 70%, 경기 24.7%, 인천 3.5%, 강원도 0.7%임.

- 현 시점에서 체험관을 누구에게나 개방한다 하더라도 체험관 운영에 특별히 부하가 걸릴 소지는 없어보이며 오히려 현실성을 반영하여 조례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안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참고로,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인 전국 14개소와 서울시 자치구가 운영중인 체험관 3개소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관내거주 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라. 12세 이하 어린이 성인 인솔자 명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안 제5조제3항)

- 안 제5조제3항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에서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인이 동반할 수 있으며 20명 초과시에는 25명까지 마다 1인씩 추가해야 한다’라는 후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과거 본 조례안의 제정(2003.4.15.) 당시 12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성인 인솔자를 동반토록 하면서 [표 4]와 같이 20명 초과시에는 25명까지 마다 1인씩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5) 개관일로부터 시민안전체험관 외국인 방문현황 (2024. 7. 31. 기준) - 총 73,802명

구 분	계	중국	싱가포르	미국	대만	일본	기타
계	73,802	58,733	1,589	672	1,239	358	11,211
광나루	44,361	38,726	619	278	150	55	4,533
보라매	29,441	20,007	970	394	1,089	303	6,678

[표 4] 12세 이하 어린이 단체 성인 인솔자 규정(조례 제5조제3항 관련) (단위 : 명)

12세 이하 어린이	20명 이하	21~25명	26~50명	51~75명
인솔자 인원	1명	2명	3명	4명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6) 규정이 신설(2017.7.6.)되어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교수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면서 체험관장으로 하여금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현재 체험관은 [표 5]와 같이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체험교육 과정마다 전담 운영교수(소방관) 1명과 운영보조(의용소방대, 의무소방대, 용역업체) 1명 이상을 두고 운영 중에 있음.

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1.~4. (생략)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표 5]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체험교육과정 정원

(단위 : 명)

구 분		새싹			재난체험			일반응급			119투어			소방관 진로체험		
		어린이안전체험		체험정원	운영인력		체험정원	운영인력		체험정원	운영인력		체험정원	운영인력		
		체험정원	교수		보조	교수		보조	교수		보조	교수		보조	교수	보조
보라매 (운영1과)	주중	30	1	3	15	1	1	15	1	2	(미운영)			(미운영)		
	주말, 공휴일	(미운영)			20	1	1	30	1	2	15	1	1			
광나루 (운영2과)	주중	30	1	3	15	1	1	14	1	2	(미운영)			30	1	1
	주말, 공휴일	(미운영)			20	1	1	28	1	2				(미운영)		

- 따라서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의 12세 이하 어린이 단체에 대한 20명 초과 시 성인 인솔자를 추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안전한 체험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마.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노력의무 신설(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에게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노력 의무를 신설하면서 조문 내용에 맞추어 조 제목을 ‘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시설의 관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임.
- 이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바. 권한의 위임 근거 신설(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체험관 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7)에서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⁸⁾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 체험관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체험관이 소방재난본부 산하에서 시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었고 관장 직급 역시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되었는 바,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실에 맞는 보다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권한 위임으로 일부 운영 및 관리 기능이 다소 방만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체험관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음.
-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이용 시설인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도 조례를 통해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7)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소속 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를행정기관, 지문기관을 말한다.

사. ‘〔별표〕 체험관 이용료’ 삭제

- 서울시는 과거 2007.10.1일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동 이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후 2016.5.19일 현행 조례 제5조제5항에 체험관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별표〕 체험관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지 않아 무료 규정과 유료 규정이 혼재되어 조례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최민규, 강석주,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유만희,
윤기섭, 이상욱,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6명)

1. 제안이유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항)
- 나.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항)
- 다.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의 체험관 휴관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라. 체험관 대상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마. 체험관 인솔자 인원의 추가 규정을 삭제함. (안 제5조)
- 바. 체험관의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명을 “시설의 관리”로 변경함. (안 제8조)

사. 체험관 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체험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13조)

아. [별표] 체험관 이용료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조례 및 「소방기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설날 및 추석”을 “설날 및 추석 연휴”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를 “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로 하고, 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재산 및 물품관리)”를“(시설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u>이 조례에 따라</u>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 ③ (생략)</p> <p><신설></p>	<p>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u>이 조례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 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생략)</p> <p>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1월 1일, <u>설날, 추석</u></p> <p>2. 3.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설날 및 추석 연휴</u></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이용대상자) ① <u>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u>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4조(이용대상자) <u>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u>----- ----- -----.</p>

1 ~ 3 (생략)

② (생략)

제5조 (이용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인이 동반할 수 있으며 20명 초과시에는 25명까지마다 1인씩 추가되어야 한다.

④·⑤ (생략)

제8조 (재산 및 물품관리) <신설>

①·② (생략)

<신설>

[별표]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 (이용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후단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이용대상자)를 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1,804,265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